

보도일시	2021. 12. 10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9.(목) 14:20 이후 / 총 8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과 장 엄대섭 서기관 박은정	044-202-7347 044-202-7352
	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	과 장 이은복 사무관 김요한	044-203-2711 044-203-2718
	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	부 장 박흥열 팀 장 전정필	052-704-7201 052-704-72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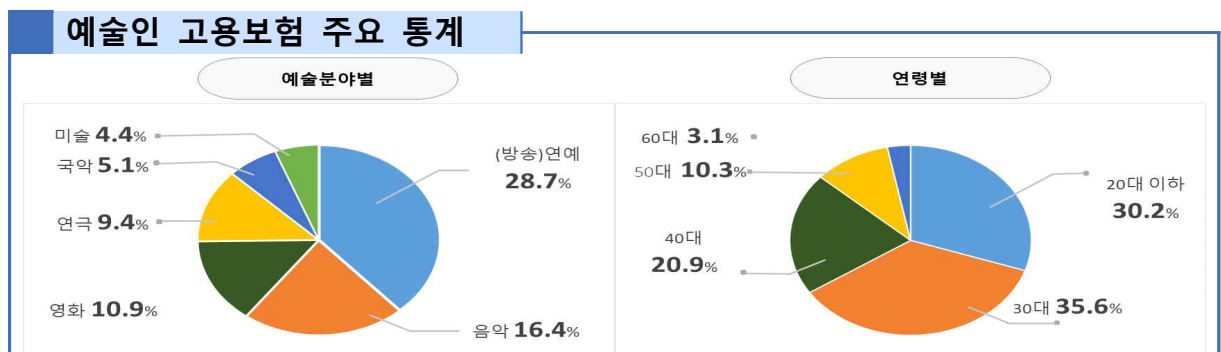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, 코로나19 위기시 고용안전망 역할 -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, 예술인 격려 및 방역상황 점검 -

< 「예술인 고용보험」 주요성과 및 현황 >

-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(12.2. 기준,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*)을 넘었다고 밝혔다.
 - *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,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
- 이에 따라,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, 11월 말 기준 '구직급여'는 109명이고 '출산전후급여'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(12.3. 기준)을 보면,
- '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'인 예술인은 4만8천명(50.8%),
'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'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(49.2%)이며,
 - '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'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'문화예술분야별(누적 신고건수 기준)'로는 (방송)연예(28.7%), 음악(16.4%), 영화(10.9%), 연극(9.4%), 국악(5.1%), 미술(4.4%)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.
 -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(음악, 연극, 국악, 무용)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
 - * 전체 예술인 중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비중 약 43%('18년 예술인 실태조사)에 반해 '21.2월 초 기준,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수 비중은 12.2%에 불과
 -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('21.2월 초, 12.2% → '21.12월 초, 34.1%)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 - * 공연업 매출액<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>: ('19.12.) 547억 → ('20.) 103억 → ('20.12.) 51억 → ('21.6.) 257억
 - '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(누적 신고건수 기준, 단기예술인 제외)'는 영화(543만원), 연예(439만원)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,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.
 - '연령별'로는 30대(35.6%), 20대 이하(30.2%), 40대(20.9%) 순, '지역별'로는 서울(65.9%), 경기(12.3%), 부산(2.5%), 대구(2.1%)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.



< 「예술인 고용보험」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>

□ 그간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,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특히, 고용노동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·배포*하여,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.

*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 개정판 '22.1 배포 예정

문화예술용역 관련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예시

- (방송)연예분야: 유튜브·팟캐스트 등 뉴미디어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라디오·TV 등 전통적인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출연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판단
- 게임분야: 게임산업분야의 특정 활동은 현재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 증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게임산업분야 성우, 일러스트레이터 등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판단

□ 아울러,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*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·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,

* 누리소통망(전자우편, 카카오톡 등)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·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

○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(가입 신고 등) 부담도 경감하였다.

< 「예술인 고용보험」을 시작으로 「전국민 고용보험」으로 >

□ 정부는 '예술인'(20.12.10.)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'특수형태 근로종사자'(21.7.1)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.

○ '특수형태근로종사자'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(11월 말 기준)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,

○ '22.1.1.부터는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- 또한, 실태조사,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하여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< 「예술인 고용보험」 1주년 계기,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 >

- 한편,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('20.12.10.) 1주년을 맞아 12월 9일(목) 14시20분 '국립극장'(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)을 방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- 안경덕 장관은 이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「환상동화」(시인과 무사, 스피리피)의 무대 준비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준비 중인 연출가,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,
- 극단 '달팽이주파수' 및 공연기획사 '(주)스토리피' 관계자와 연극 분야 예술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국립극장은 실내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한 공연문화 관람 확산을 위해 접종증명(접종완료자)·음성확인제(미접종자)를 적용하고 있고, 이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접종완료 전자증명서 확인, 전자출입명부 체크인을 비롯하여 체온 측정, 손소독 등 공연장 방역 준비상황도 살펴보았다.
-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·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이 넘었다”라면서,
- “문체부를 비롯하여 공연장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만큼, 안전한 공연문화 확산을 통해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”,

- “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‘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’(‘20.12.24.)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하였다.

□ ‘예술인 고용보험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(☎1588-0075 또는 02-6945-0650), ‘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’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(☎02-3668-0258)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서기관(☎044-202-7352),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요한 사무관(☎044-203-271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

□ 방문개요

- (일시) 12.9.(목) 14:20~15:20
- (장소) 국립극장(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)
- (참석자) 공연단체 관계자, 연극분야 예술인,
고용노동부장관, 문체부·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
- (주요내용) 공연 연습현장 관람·격려, 공연단체 관계자·예술인 등 간담회

□ 주요 일정(안)

※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

시 간	내 용
14:20~14:25('5)	도착 → 공연 준비 현장으로 이동
14:25~14:35('10)	연극 「환상동화」 무대 준비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격려
14:35~15:20('45)	공연단체 관계자 및 예술인 간담회

□ 공연현장

환상동화
<연극>



- (주최) 국립극장, 시인과무사, (주)스토리피
- (공연기간) 21/12/12~22/2/12
- (공연시간) 화·수·목·금 19:30/
토·일·공휴일 15시, 19:30
- (관람시간) 110분
- (공연장소) 달오름 극장
- (티켓가격) 4.4만원~6.6만원
- (공연내용) 전쟁광대, 사랑광대, 예술광대가 전쟁과 사랑, 예술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함

□ 가입자 현황(12.2. 기준)

- (가입자 수) 누적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9만 5천 명*

(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장(5,343개소) 중 4,889개소에서 신고)

*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,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

- 이 중 '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'인 예술인은 4만8천명(50.8%),
'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'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(49.2%)
- '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'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천명 정도 활동
- (문화예술분야별) (방송)연예(28.7%), 음악(16.4%), 영화(10.9%), 연극(9.4%), 국악(5.1%), 미술(4.4%)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음
- (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) 단기 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평균은 303만원이며, 영화(543만원), 연예(439만원), 문학(234만원), 건축(221만원)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
- (연령별) 30대가 가장 많고(35.6%), 20대 이하(20.2%), 40대(20.9%), 50대(10.3%) 순으로, 60대(3.1%)가 가장 적음
- (지역별) 서울(65.9%)이 압도적으로 높으며, 경기(12.3%), 부산(2.5%), 대구(2.1%) 순

□ 수급자 현황(11월 말 기준)

- (구직급여) 수급자 수 109명, 전체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 평균 45,867원
- (출산전후급여) 수급자 수 23명, 전체 수급자의 출산전후급여 평균 월 170만원

- **(적용대상)** ①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* (적용제외)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,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 (단,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)
- **(피보험자 관리)**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, 변동·상실 등 관리(보험료 납부 포함)
- **(이중취득)**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(근로자 포함)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
- **(보험료)**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(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.7% 균등 부담)
- * (부과소득 기준) 예술인의 보수는 "소득세법상 사업소득(제19조)과 기타소득(제21조)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(20%) 등을 제외한 금액"
- **(구직급여)**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*시,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%(1일 상한 6.6만원)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(근로자와 동일)간 지급
- *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,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
- **(출산전후급여)**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*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
- * (상한액) 월 200만원(근로자와 동일), (하한액) 월 60만원